

	<h2 style="margin: 0;">집중수업 운영규칙</h2>		규정번호	3-3-31	
			제정일자	2020.03.01.	
			개정일자	2020.09.01.	
			개정번호	ver.1	총페이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칙 시행세칙」 제29조의 집중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집중수업”이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별 교과목별로 학점당 이수시간(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과목 운영 승인) ① 집중수업은 전문학사 교육과정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산업체위탁과정은 제외한다.

② 집중수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는 학과 ‘교육과정개발및편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중수업 운영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

③ 집중수업 교과목은 대학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④ <삭제 2020.09.01.>

⑤ 주당 수업시간이 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집중수업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4조(운영 방법 등) ① 집중수업은 수업일수를 제외하고는 일반 교과목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② 집중수업 교과목을 포함한 모든 교과목은 학기 시작 후 수업일수 4분의 3 이내에 총 이수시간 4분의 3 이상의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③ 집중수업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는 15주 운영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④ 집중수업 교과목의 성적 입력과 강의평가는 일반 교과목과 동일한 시기에 진행한다.

⑤ 집중수업 교과목 수업의 공적사유로 인한 출석 인정은 총 이수시간의 4분의 1까지만 허용한다.

⑥ 동일 교과목을 15주 수업과 집중수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모든 강좌를 집중수업으로 운영할 때에는 강좌별로 수업주차를 다르게 할 수 없다. <신설 2020.09.01.>

⑦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에 복학한 학생의 수강신청은 불허한다. 단, 해당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경우 수강신청을 허용하고 결손된 수업은 담당교수가 온라인수업을 제공하거나 보충수업을 통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09.01.>

제5조(강의시수 인정 및 강사료 지급) ① 집중수업 교과목의 담당 교원 주당 강의시수는 15주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인정한다.

② 집중수업 교과목의 강사료는 수업 기간과 관계없이 15주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학적변동에 따른 성적처리 등) 집중수업 교과목의 수업이 종료되어도 학기 시작 후 수업일수 4분의 3 경과 이전에 휴학 및 자퇴한 학생에게는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제7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본문 제3조4항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